

#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송정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6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3월 24일  
발 의 자 : 송정빈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강대호, 김경영, 김춘례,  
김태수, 김태호, 노승재,  
성흠제, 신정호, 안광석,  
오현정, 유정희, 이광성,  
최웅식, 최정순, 황규복  
의원(15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상수도사업본부 내 감사 또는 조사기능 마련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조사과를 설치(2021.1.1.)한 바 있으나, 조례에 안전조사과에 관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안전조사과의 자체조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투명하고 공정을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2제1항 신설)
- 나. 자체조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의2제2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자체조사) ①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“자체조사”란 관리자가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·점검·확인·분석·검증하는 것을 말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의2(자체조사) ①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“자체조사”란 관리자가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·점검·확인·분석·검증하는 것을 말한다.</p>